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28호

2024. 4. 1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605호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 ----- 6
- 삼척시 조례 제1606호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삼척시 조례 제1607호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10
- 삼척시 조례 제1608호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삼척시 조례 제1609호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5
- 삼척시 조례 제1610호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삼척시 조례 제1611호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삼척시 조례 제1612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삼척시 조례 제1613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삼척시 조례 제1614호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삼척시 조례 제1615호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40
- 삼척시 조례 제1616호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45
- 삼척시 조례 제1617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87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49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638호 삼척시 가곡 유희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공 람									
--------	--	--	--	--	--	--	--	--	--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05호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영상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영화제 및 관련 부대행사 개최
- 2. 영화제 출품작 공모 및 시상
- 3. 영화 제작 활성화 및 국내외 영화제 교류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최 및 주관 등) ① 영화제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

②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이 영화제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영화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제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문

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문화홍보실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영상·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장이 서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3조(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임직원, 출품자, 출품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화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영화계 종사자
2. 지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영상·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영화제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영화제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영화제의 업무·회계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06호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보조기관”을 “기관”으로,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를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이후에는 이종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07호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삼척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문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의회,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삼척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삼척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삼척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삼척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08호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더풀 삼척”으로 한다”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소식지”를 “시장은 소식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09호(의원 발의)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규정함”을 “규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답례품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고향사랑 기부금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의”를 “한다)과 그 공급업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답례품”을 “답례품과 그”로, “공모 및 선정”을 “공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업체”를 “그 공급업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선정위원회는”을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제18조”를 “제18조, 제19조”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특산품과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관련 단체를 대표하

거나 그 생산·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의 제목“(답례품의 종류)”를“(답례품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2.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과 삼척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을 “선정위원회는”으로, “제품 등을 우선”을 “제품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른”을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품목”을 “제품”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시에 소재한”을 “관내에 있는”으로, “물품”을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관광 입장권 등 삼척시”를 “관광지 입장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선정·운영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 식품·가공품,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 상품
8. 시에서 인증하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4조의 제목“(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4항”으로, “답례품 공급업체를”을 “그 공급업체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삼척몰, 강원더몰 등 시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포함한다), TV 홈쇼핑의 입점·판매 여

부

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를 "(답례품 등의 공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을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을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경우"로, "포함한 공고문을"을 "포함하여"로, "전에 미리"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답례품"을 "답례품 등의"로, "고려사항"을 "고려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에 고행사랑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행사랑 기부금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본"을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납부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고행사랑기금의 관리·운

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의 사용 목적)”을 “(기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을 “제8조에 따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금”을 “고향사랑 기부금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를 “시장은 기금의”로, “위해”를 “위하여”로, “지정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 업무 부서장”을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 업무”를 “기부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는”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심의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 운영”을 “기금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한 중요”를 “관한 중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 담당 국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스스로”를 “위원 스스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질병 또는”을 “질병이나”로, “없다고 판단되는”을 “없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무수행에”를 “위원으로”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7조, 제18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로, “가 되거나”를 “이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진술”을 “진술, 자문, 연구,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을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로, “이를”을 “기피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총전의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그”를 “부위원장이 그”로 한다.

제18조(총전의 제17조)제1항 중 “구분하며”를 “구분하고”로, “소집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때 개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를 “심의 안건 및 서면 회의”로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8조(총전의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하여 위원”을 “위원”으로, “충분하지 않은”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족수의 충족이”를 “정족수를 채우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로, “처리하기 위해”를 “처리할”로,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의위원회”

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금 발전방안”을 “기금의 발전 방안”으로 한다.

제21조 중 “심의위원회”를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를 “전문가 등에게”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총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 활동
2. 기금사업 발굴 또는 답례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시상금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 동기부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영 제1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제3조제2항에 따른 삼척고향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 답례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부자에게 「삼척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0호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제3조 및 제4조”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을 “봉양수당 지급”으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급대상”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두고”를 “두고,”로, “봉양자를 말한다”를 “봉양자에게 봉양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기준”을 “제1항에 따른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 월 20,000원”을 “사람: 월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

람:"으로, "1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 사망·전출 등"을 "사람이 사망·전출 등으로 더 이상"으로,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신청"을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신청을"로 한다.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생활하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장·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장·면장·동장은 제4조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거주하면서 성실하게"를 "거주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읍장·면장·동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동장은 수당지급에 있어"를 "읍장·면장·동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로, "지급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로, "현황을"을 "결과를"로,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망한 경우와"를 "사망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신청하였거나 읍·면·동장"을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읍·면·동장”을 “읍장·면장·동장”으로, “비치 관리”를 “비치·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1호(의원 발의)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진로·직업체험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포래 상담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지원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본문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필요한 팀으로"를 "필요한"으로,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배치"를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종사자를 채용·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직원을"을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채용하는"을 "면직하는"으로 한다.

② 센터 종사자는 채용 공고일 현재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을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공기관,"으로, "삼척시"를 "지역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와 같다"를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를 "(이용자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센터 직원은"을 "센터의 종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도·감독하여야 하며"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로, "그 업무에 관하여"를 "센터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로,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를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

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을 “지도·점검 결과”로, “필요한”을 “시정 요구 등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림, 훼손 및”을 “시설·비품 등을 훼손, 분실,”로 한다.

제15조 중 “이”를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이”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2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도계도서관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	
원덕도서관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1	
남양 작은도서관	삼척시 중앙시장1길 18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별표 2]

공공도서관 이용료(제18조 관련)

1. 도서관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규격	단위(1매당)	금액	비고
B5	단면	30원	
	양면	50원	
A4	단면	40원	
	양면	60원	
B4	단면	50원	
	양면	80원	
A3	단면	70원	
	양면	100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도서관명	실명	기준	금액	비고
원덕도서관	다목적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강의실			

3. 회원증(RF카드) 발급 수수료

가. 신규 발급: 무료

나. 재발급(분실·훼손): 1,000원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3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5.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4호(의원 발의)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척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로,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지원에”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을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진학을"로, "있도록"을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로, "진로상담, 진로정보"를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를 "진로·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으로, "활동"을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진로·진학정보"란 청소년이 진로·진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범위)"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영 및 지원"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의 수집과"를 "정보수집,"으로, "제공"을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의 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삼척시(이하"시)"를 "삼척시(이하 "시)"로, "청소년 및 그 학부모"를 "청소년과 그 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 및 학부모"를 "청소년과 그 부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학부모 및"을 "부모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의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그”를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지원”을 “경비의 지원”으로,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을 “정산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로, “설치하여 운영”을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로, “참여”를 “부모 참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센터는 그”를 “시장은 센터의”로, “1명을 포함한 행정인력을 직원으로”를 “1명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5호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버스 무료 이용의 편의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문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등) 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양도·대여 금지) ① 교통복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문송사업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문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문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 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구 분	1. 신규 () 2. 재발급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					
	1. 본인 () 2. 대리인 () ※ 대리인 위임장 작성(서식 하단)					

본인(대리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발급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손실요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운송사업자	손실요금 청구	교통복지카드 사용내역	5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취급을 위탁 받는자 (수탁업체)	업무내용		보유기간
	교통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이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관 계
	주 소			

※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6호(의원 발의)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추진한다.

1.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삼척시장 박상수

2024년 4월 12일

삼척시 조례 제1617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며, 이 경우 매월 감면 요금은 해당 업무담당부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요금의 30퍼센터를 감면하며, 그 상한액은 20만원 이하로 한다.

나.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요금의 7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
제공미터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4-8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안길 117-37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등·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10-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안길 117-37	20240411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 활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4-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927-41	20240411	신규 부여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4-638호

『삼척시 가곡 유허온천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삼척시장

삼척시 가곡 유허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곡유허온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등의 상승분 및 인근 유사시설의 이용 요금 등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온천장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나. 온천장 이용료 인상 및 성수기 이용료 추가 징수 신설(별표)

(현행)

구분		대인	소인
온천이용료		9,000	6,000
스파 이용료	주중	18,000	11,000
	주말	22,000	13,000

(개정)

구분		대인	소인
온천이용료		10,000	7,000
스파 이용료	주중	22,000	13,000
	주말	27,000	16,000

3. 입법예고기간 : 2024. 04. 11. ~ 05. 0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관광개발과
 - 전 화 : 033 - 570 - 3093
 - 팩 스 : 033 - 570 - 3165

5. 참고사항

이 조례(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가곡 유흥온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가곡 유허문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가곡 유허문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온천장이용료

구분		대인	소인	단체(20% 할인)		지역주민(30% 할인)	
				대인	소인	대인	소인
온천이용료		10,000	7,000	8,000	5,600	7,000	4,900
스파 이용료	주중	22,000	13,000	17,600	10,400	15,400	9,100
	주말	27,000	16,000	21,600	12,800	18,900	11,200

- 이용료 할인
1. 단체: 3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20% 할인
 2. 지역주민: 삼척시,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30% 할인
 3. 경로우대자(65세 이상) 30% 할인
 4. 장애인·국가유공자·관내군인(동반가족 2명까지) 30% 할인
 5. 면제: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아

※ 대인은 13세 이상, 소인은 36개월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성수기(하계 및 동계 기간 중 일정 기간)에는 이용료의 30% 범위에서 이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시장은 문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수 있으며, <u>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